

주택도시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
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01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9.

발 의 자 : 엄태영 · 김상훈 · 박충권
진종오 · 이만희 · 윤한홍
서명옥 · 이현승 · 안철수
서천호 · 김재섭 · 권영진
윤재옥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보증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차인 보호 및 원활한 구상권 행사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의7 신설).

법률 제 호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3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4조의7(출국금지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제34조의5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「출입국관리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에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구상채권의 회수, 임대인 재산의 압류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국금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출국금지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34조의7(출국금지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제34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「출입국관리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.</u> <u>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에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</u> <u>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구상채권의 회수, 임대인 재산의 압류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.</u> <u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에 필요한</u>
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